

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5. 24.

원 주 시 장

1. 공고대상

대상자	차량번호	대상자 주소	위반사항	위반장소
이*호	167호****	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50, ****동 ****호	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	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26
이*원	244구****	강원도 원주시 혁신로92,***동 ****호	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	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-3
정*호	260무****	강원도 원주시 혁신로92,***동 ****호	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	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42-4
박*	67보****	강원도 원주시 혁신로92,***동 ****호	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	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2
신*원	42조****	강원도 원주시 혁신로92,***동 ****호	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	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42-4

2. 공고기간: 2023. 5. 24.(수) ~ 2023. 6. 9.(금)

3. 공고내용

가.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진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, 공고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만약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

차량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하오니,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주시 기후에너지과(033-737-3046)로 연락 바랍니다.

라. 추가감면대상자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합니다.

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

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-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

5) 미성년자

마. 납부방법: 재발부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시중은행에 납부

4. 문의처 :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(☎033-737-3046)